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호공백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통보 및 직권 신청 등〉

■ 박성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921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I. 개요

1. 박성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92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성민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5. 12.
- (3) 회 부 일 : 2026. 5.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가구의 발굴,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친권자 및 보호자의 체포·구속·수용 등의 사유로 미성년 자녀 등에게 보호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정보를 복지체계에 신속히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기관에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친권자나 보호자의 부재·연락두절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현행 직권신청 제도만으로 적시에 급여를 연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검찰청 및 교정시설을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포함하고, 미성년 자녀 등 취약가구원에게 보호공백이 발생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정보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취약가구원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등).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미성년자인 지원대상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고 (안 제5조제3항),

보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와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으로 검찰청 및 교정시설을 추가하는 한편(안 제11조제1항),

경찰서·검찰청 또는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이 보호자의 체포, 구속, 수용 등으로 인하여 보호공백 상태에 있거나 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며(안 제11조의2 신설), 통보를 받은 보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 ② (생략)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 대상자가 <u>심신미약 또는 심신 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u>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 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 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심신미약, 심 신상실 또는 미성년자인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 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 ----- ----- ----- ----- -----.
④ ~ ⑥ (생략)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 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 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 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 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7. ~ 11.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설>

6의2. 「검찰청법」 제2조에 따
른 검찰청

6의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에 따른 교정시설

7. ~ 11.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보호공백 우려가구에

관한 통보) ① 경찰서의 장, 검
찰청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
람, 장애인 또는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보호
자의 체포, 구속, 수용, 장기 부
재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
여 보호공백 상태에 있거나 그
우려가 높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만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보호공백 우려가구원의 성
명, 주소 및 연락처

2. 연락 가능한 보호자 또는 관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 12. (생략)

<신설>

계인의 유무

3. 보호공백 발생 또는 우려의 사유

4. 그 밖에 지원대상자 발굴, 현장 확인 및 긴급지원 연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범죄사실, 혐의내용, 수사경과, 형량 등 지원대상자 발굴 및 보호조치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는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및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통

2. 검토의견

□ 「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제1항¹⁾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현행법 제5조²⁾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도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등이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대통령령³⁾으로

1) 「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이하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③ 법 제5조제3항 전단에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중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그 요건을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음.

아울러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및 현장조사 협조 요청 대상 기관에 검찰청과 교정시설을 추가하고, 경찰서·검찰청·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보호자의 체포·구속·수용 등으로 인하여 미성년자 등이 보호공백 상태에 있거나 그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이를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호자의 체포·구속·수용 등으로 발생하는 미성년자의 복지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사회보장급여 및 돌봄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연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의 요건으로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를 추가함에 따라 오히려 직권 신청의 범위가 축소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5조제3항 및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르면, 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미성년자, ③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2. 미성년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즉, 현행 체계에서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에 해당하기만 하더라도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는 직권 신청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심신장애 등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직권 신청을 통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의사 확인까지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현행 제도보다 직권 신청의 활용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결국, 이는 의사 표시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직권 신청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보호공백 상태에 놓인 미성년자 등을 복지체계에 신속히 연계하려는 개정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음.

- 둘째, 개정안은 보호공백 우려가구에 관한 통보를 받은 보장기관이 보호자의 부재로 인하여 보호공백 상태에 있거나 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가구를 위기가구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위기가구 개념에 이미 포섭될 수 있어 중복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현행법 제9조의2제1항제1호4)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으로부터 공유받은 자료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를 위기가구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제11조제1항에 검찰청 및 교정시설을 추가하여 해당 기관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제1항제13호를 신설하여 보호공백 우려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개정안에 따른 보호공백 우려가구 역시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집·처리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제11조의2에 따른 통보를 받은 가구를 별도의 위기가구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법상 위기가구 규정으로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공소청범」의 제정으로 검찰청의 명칭이 공소청으로 변경⁵⁾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5) 「공소청범」(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제2조(공소청) 검사(檢事)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을 둔다.
부 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검찰청법은 폐지한다.

「검찰청법」

제2조(검찰청) ①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3. 관계 부처 의견

□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 대해 공감하나, 미성년자는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의하여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할 수 있고,

‘보호공백 상태’와 ‘보호공백 우려가구’를 판단할 의무가 부과되는 경찰서, 검찰청, 교정시설 소관 부처의 의견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경찰서·검찰청·교정시설이 통보한 보호공백 우려가구를 지자체가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위기가구보다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일선 현장의 판단과 권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의견수렴 및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498